

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2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상업등기법」 제15조 및 「상업등기규칙」 제26조에 따라 ‘법인등기부등본’은 ‘법인등기사항증명서’로 명칭이 변경(2008년 제정)되어 법령-자치법규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상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2조 제2호의 ‘법인등기부등본’을 ‘법인등기사항증명서’로 변경하여 법령과 자치법규간 통일성을 확보(안 제2조 제2호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5. 예산수반 사항: 해당없음

6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6. 7. 8. ~ 7. 28.(20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건설국 건설정책과

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”을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인등기부등본”을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하남시에”를 “시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”를 “법 제10조 및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3조”로, “보증가능금액)”을 “보증가능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경쟁력있는 지역건설 산업체”를 “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산업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역 건설업체”를 “지역의 건설업체”로, “지역 건설산업체”를 “지역건설산업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인·허가”를 “인가·허가”로, “지역건설 근로자”를 “지역건설근로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1조”를 “법 제81조”로, “지역 건설산업”을 “지역건설산업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위하여지역건설산업체”를 “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건설산업”을 “지역건설산업체”로, “연1회”를 “연 1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지역건설업체”를 “지역의 건설업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인·허가 시 지역건설업체”를 “인가·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

“건설산업체”를 “지역건설산업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”를 “시행령 제13조”로, “미달(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비·사무실, 보증가능금액)”을 “미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하남시 내”를 “관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”를 “시행령 제13조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 할”을 “지원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한”으로, “참가 시 지원”을 “참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산·학·연 기술개발사업에 참가하는 업체의 사업비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하여 선정한다”를 “따라 선정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중단한다”를 “중단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”으로, “있도록”을 “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발주한 하남시”를 “발주한”으로,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과 제2항의 사항”을 “제1항에 따른 권장사항”으로 한다.

1.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
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

2.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
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

3.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
직접 시공비율을 확대할 것

4. 지역건설기계 사용비율을 45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00억원” 을 “100억 원” 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위원회)” 를 “(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)” 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15인” 을 “15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시
의회” 를 “시의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해야한다” 를 “하여야 한
다” 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잔여기간” 을 “남은 기간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건설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.성명	건설과장 하 정 태
	팀장 직위.성명	건설행정팀장 이 광 호
	담당자 성명.전화	이 광 호 (031-790-529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지역건설산업”이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,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, 유통업을 말한다.	1. ----- 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.
2. “지역건설산업체”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, 용역, 자재생산,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.	2. ----- 법인등기사항증명서----- ----- ----- -----.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“지역건설근로자”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<u>하남시에</u>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	4. ----- ----- <u>시에</u> ----- ----- -----.
5. “공동수급체”란 구성원을 2	5. ----- <u>2명</u> -----

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
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
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
실체를 말한다.

6. “등록기준 미달업체 등” 이
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
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 및
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
른 등록기준(기술능력, 자본
금, 시설·장비·사무실, 보증
가능금액)을 충족하지 못하거
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
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
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
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.

7. (생략)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하남시장
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
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
력있는 지역건설 산업체 육성과
건설신기술 정보제공, 교육, 제
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
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
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

-----.

6. ----- 법
제10조 및 「건설산업기본법
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 이
라 한다) 제13조-----

----- 보증가능금액
을 말한다. 이하 같다)-----

--.

7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

----- 경쟁력 있는 지
역건설산업체 -----
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지역의 건설산
업체----- 지

우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인·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·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⑤·⑥ (생략)

⑦ 시장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,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, 하도급의 적정여부,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. 이 경우 실태조사를

역건설산업체-----

-----.

④ ----- 인
가·허가----- 지
역건설근로자-----

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 법 제81조 -----

----- 지역건설산
업-----
--.

제5조(실태조사) ① -----

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-----
-----.

② ----- 지역건설
산업체 -----
----- 연 1회 -----
-. -----

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
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
있다.

1. · 2. (생략)

3.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
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

4. 지역의 민간사업 인·허가
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
사항

5.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
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·이유
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
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
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
사 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
는 행위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
라 실태조사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
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
(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
비·사무실, 보증가능금액)

2. · 3. (생략)

4. 일시적인 하남시 내 사무실
운영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 지역의 건설업체-----

4. ----- 인가·허가
시 지역건설업체 -----
--

5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지역건설산업
체-----
-.

④ -----

-----.

1. ----- 시행령 제13조-
----- 미달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관내 -----

등으로 판정되는 경우

5. (생략)

⑤ (생략)

⑥ 정부 또는 시·도 등의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건설사업자는 그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⑦ (생략)

제6조(지원) 시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.

1.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

2. (생략)

3. 산·학·연 기술개발사업 참가 업체 사업비 지원

4. (생략)

제7조(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

5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 시행령 제13조
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지원) -----

----- 지원할 -----.

1. ----- 위
한 ----- 참가

2. (현행과 같음)

3. 산·학·연 기술개발사업에 참가하는 업체의 사업비

4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8조(적용배제) 시장은 우수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9조(분할발주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(경기도) 입찰대상사업으로 한다.

1. (생략)

2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

3. (생략)

-----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적용배제) -----

----- 중단하여야 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분할발주) ① ----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경우에는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-----

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

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이 떨어지거

제10조(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

① ----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-----

---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-----.

1.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

2.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

3.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을 확대할 것

4. 지역건설기계 사용비율을 45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

<삭 제>

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
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
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
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
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
극 권장할 수 있다.

1.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
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
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퍼
센트 이상

2.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
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
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

3.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
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
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
확대

4. 지역건설기계 사용비율 45퍼
센트 이상

③ 시장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
이 발주한 하남시 관내 건설공
사에 대하여도 해당 사업의 특
성과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아니
하는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에
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
여, 지역건설기계의 사용 등을

③ -----
발주한 -----

제1항 -----

-----.

적극 권장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(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)

시장은 지역중소건설업체 활성화
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원
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예정가
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
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· 2. (생 략)

제12조(위원회) (생 략)

제1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
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
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
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
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
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
다.

1. (생 략)

2. 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

④ ----- 제1항에 따른 권장사
항-----

-----.

제11조(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)

----- 100억 원 -----

-. -----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)
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구성) ① -----
----- 15명 -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시의회-----

3. ~ 5. (생 략)

③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(性)
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
야한다.

제15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
2년으로 하되, 1회 연임할 수 있
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
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하여야
한다.

제15조(임기) -----

----- 남은
기간-----.

관련 법령 및 조례

1 「상업등기법」

제15조(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)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.

2 「상업등기규칙」

제26조(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)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(이하 “등기사항증명서”라 한다)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 11. 29.>

②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,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.